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p>[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p> <p>■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및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p>&lt; 건축 분야 &gt;</p> <p><input type="checkbox"/> 건축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서향 단위세대는 기존안의 남서향이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기존안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남향 또는 남서향으로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기존안에서 개선 방향 추가 검토 하고, 특히 404동 북서향에 대해서는 남서향 뿐만 아니라 동향으로도 검토하는 등 일조권 향상시키기 바람(코어부분 채광 확보 및 승강기 2대 설치안은 유지하고, 1층은 필로티 계획 검토).</li> <li>○ 403동 주차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차량 불빛으로 인한 개선 방안은 미흡하므로 주동 저층부를 필로티로 계획 바람.</li> <li>○ 408동 추가 계획(11층)으로 단지내 외부공간 개방감이 축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계획 추가 바람.</li> <li>○ 101동~302동 코어가 상대적으로 협소해졌으므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좀 더 이격하고, 407동은 승강기 홀의 채광·환기를 위하여 창호를 설치 바람.</li> <li>○ 405동 북측 어린이놀이터는 일조환경 향상을 위하여 위치 조정 바람.</li> <li>○ 어린이집 보육실 크기를 확대하고, 노출된 주방 안전대책 확보 바람.</li> <li>○ 경로당 출입문(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은 사생활 피해 우려가 있으니 위치 조정(이격) 바람.</li> <li>○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인정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재계획을 조정하여 동사우려 수종을 줄이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 계속 -</p>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 건축 분야 >

### 환경

-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 조정 바람(102, 202동 남동측 주동 상부는 음영으로 효율이 낮으므로 405, 409, 410동의 남동측 주동 상부 태양광 패널 폭을 최대한 확대 조정 검토)

##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적용
  -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5.00%, 비주거 8.00%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sub>2</sub>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 1) 대지면적 1,000m<sup>2</sup>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m<sup>2</sup>이상의 건축물.
  -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